

제 969 호
1983. 6. 7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시장 김성배
공보관 전영호
전화 : 72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25-6090

시보

차례

○ 고 시		
제 291 호	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위치고시	3
제 292 호	도시계획시설(학교,도로)지적고시	3
제 293 호	도시계획시설(도로)시행인가고시	4
제 294 호	도시계획시설(학교,도로)지적승인	5
제 295 호	도시계획시설(운동장,도로,하수도)지적승인	6
제 296 호	도시계획시설(도로)시행허가변경	7
제 297 호	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7
제 298 호	8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입세출수가경장예산고시	7
제 299 호	한도특별가규정의지급(롯데분구)경비사업신시계획변경인가	8

<이 면 계 속 >

공 보 관										
인										

1. 시보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

서울특별시

2175

제 300 호	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	8
제 301 호	: 도시계획사업(학교) 변경시행허가	9
제 302 호	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10
제 303 호	: 도영구역제 12 지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	11

◎ 공 고

제 300 호	: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지정공고	11
제 301 호	: 서울특별시올림픽사업비특별회계분임징수관공인등록공고	12
제 302 호	: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	12
제 304 호	: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계획 공람공고	13
제 305 호	: 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 완료공고	14
제 307 호	: 도영구역제 11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 공람공고	14
제 308 호	: 투기과열지구지정	15
제 309 호	: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회계관계 공무원직인신조등록공고	15

◎ 구 칭 공 고

제 24 호	: 공인추가신조및개각공고	17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91 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지하철운영
사업소 분원 위치고시

83.4.22.자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

무원교육원 지하철운영사업소 분원설치
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
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지하철운영사업소
분원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

1983.6.7

서울특별시 장

위 치	기 관 명	비 고
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82	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지하철운영사업소 분원	신 설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92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79 호 (83. 2. 14) 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에 대하여도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

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3.6.7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 시설 (학교) 지적 승인조서

구 분	시설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 설	학 교	성북구 장위동산 3-86 일대	11,402 ㎡ (3,449.1 평)	

*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끝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93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4 호 (83.3.9) 및 동 고시 제 169 호 (83.3.22) 에 의하여 도시계획(도로)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09-2-213-2 호간 도시계획사업(도로) 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시행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3.6.7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09-2-213-2
- 나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성북동 쌍다리 - 치안주택간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시행
- 다. 사업의 규모 : 도로 확장 B = 3 m
L = 200 m 하수도 D = 1000 mm
L = 132.5 m 기타부대공 1 식
- 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성북구청)
- 마. 사업의 착공 및 준공 년월일
착공 : 인가후 20 일 이내
준공 : 83.12.31.
- 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
조서
- 사.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: 별첨

토 지 조 서

의뢰부서 (성북구 건설관리과)

일련 번호	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	면적	실제이용 상황	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	비고
1	성북동 213-50	대		16㎡		성북동 213-2	윤중현
2	213-51	"		26		" 213	현진해
3	213-52	"		2		"	현진해
4	215-6	"		58		고양군중면일산리 617	조숙자
5	215-9	"		2		"	조숙자

일련 번호	소재지 지 번	지목	지적	편 입 면 적	실제이용 상 황	소 유 자 주 소 성 명		비 고
						관 계 자 주 소 성 명		
6	성북동 215-11	대		36㎡		성북동 215-3	임병찬	
7	215-12	"		16"		" 215-2	정해석	
8	112-8	"		16"		" 112-4	유근용	
9	111-30	"		4"		" 116	박수윤	
10	112-7	"		13"		" 112-3	박진수	
11	112-6	"		19"		" 112-2	송재희	
12	112-5	"		18"		" 112-1	신영주	
13	110-7	"		4"		" 110-1	김의근	
14	110-6	"		20"		"	최정순	
15	110-5	"		11"		"	최정순	
16	109-7	"		63"		중구신당동 267-38	박만원	

건 물 조 서

(성 북 구 건설관리과)

일련 번호	소재지 지 번	지목	지적	편 입 면 적	실제이용 상 황	소 유 자 주 소 성 명		비 고
						관 계 자 주 소 성 명		
1	성북동 112-1	목조외집		18㎡		성북동 112-1	신영주	
2	112-4	"		19㎡		" 112-4	유근용	
3	109-2			16㎡		중구신당 267-38	박만원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94 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, 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 호 (82.2.3) 및 동고시 제 313 호 (82.8.12)를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

설(학교, 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3.6.7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 승인조서							
구분	시설명	위치		면적 (㎡)	비고		
신설	학교	성동구 구의동 587-52 일대		15,097			
기정	"	" 자양동 506 일대		14,520			
변경	"	" " 506-1 일대		13,790			
나. 도시계획 시설 (도로) 지적 승인조서							
구분	등급	류별	폭원(m)	연장(m)	기점	종점	비고
기정	소로	2	8	146	자양동 553-266	자양동 504	폐지
변경	"	2	8	146	"	"	
신설	"	2	8	146	자양동 553-475	자양동 504-2	
다. 결정도면 별첨 생략							
<p>◎ 서울시고시제 295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운동장 , 도로 , 하수도)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시 고시 제 477 호 (82.11.24) 및 서울시 고시 제 134 호 (83.3.9) 및 서울시 고시 제 135 호 (83.3.10) 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</p>				<p>설 (운동장 , 도로 ; 하수도) 을 도시 계획법 제 13 조와 동법 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3.6.7 서울특별시장</p>			
1. 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조서							
구분	시설명	위치		면적	비고		
신설	운동장 (수영장)	마포구 성산동 산 11-1 일대		21,569.87 ㎡			
2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조서							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시점	종점	비고
기정	소로	3	6 m	35 m	창전동 산 2-22	창전동 산 2-23	폐지
변경	소로	3	6 m	35 m	"	"	

3.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조서						
구분	시설명	폭원	연장	시 점	종 점	비 고
기정 변경	하수도 "	6 m "	1100 m "	성산동 481-1 "	성산동 398-2 "	일부구간위치변경

4.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96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시행허가 변경</p> <p>1. 서울시 고시제 529 호 (82.12.17) 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시행허가된 마 포구 성산동 373-10 호 - 373 - 7 호까지 암거 설치 및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 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 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3 . 6 . 7 서울특별시장</p> <p>다 음 (변경기간)</p> <p>1. 당초 사업기간 1982.12.17-83.5.31</p> <p>2. 변경사업기간 1982.12.17-83.9.30</p> 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97 호</p> <p>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</p> <p>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</p>	<p>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 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3.6.7 서울특별시장</p> <p>다 음</p> <p>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</p> <p>2. 사업주체 : 강남구 서초동 182번지 (주) 우성건설 대표 최 승 진</p> <p>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</p> <p>가. 위치 : 강남구대치동 43 번지의 214 필지</p> <p>나. 면적 : 35,185.7 ㎡</p> <p>다. 규모 : 아파트 15층 5 동 420세대 상가 4 층 1 동 및 부대복 리시설</p> <p>4. 사업시행기간 : 1983.6-1984.8.31</p> 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98 호</p> <p>1983년도 제 1 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고시</p>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83년 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단위 : 천원

회 계 명	예 산 액
○ 일 반 회 계	799,394,213
○ 특 별 회 계	944,774,000
- 지하철은수 사업	340,948,000
- 수도사업	143,336,000
- 병원사업	6,248,000
- 국민주택	83,443,000
- 주택재개발	21,053,000
- 토지구획정리	116,503,000
- 하수처리장	31,212,000
- 유로도로	8,615,000
- 주차장시설	4,289,000
- 의료보호기금	6,616,000
- 특정건축물	3,628,000
- 올림픽사업	78,881,000
- 목동, 신정동개발	100,000,000
○ 기금은능계획	
- 도시개발기금	103,662,000

- 재해구호기금 2,868,000

1983.6.8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299 호

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(롯데분구)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49 호 (76.3.13) 및 제 222 호 (82.6.15) 로 실시계획인가된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롯데분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5 조, 제 26 조 및 동법시행령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3.6.9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시행자의 주소, 성명
주소 : 서울특별시소공동 1번지
성명 : 주식회사호텔롯데 (대표 조동래)
- 나. 사업기간
당초 : 1975.12-1983.5.31
변경 : 1975.12-1984.5.31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00 호

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	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 2. 주요변경 승인내역 1983.6.9 서울특별시장
--	---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사업주체	강남구대치동 316 번지 한보주택(주) 대표 정태수	강남구대치동 316 번지 A 단지 : 한보주택(주) 대표 정태수 B 단지 : 한보주택(주) 대표 정태수 한보상사 대표 정태수
위 치	강남구대치동 45 번지의 166필지	강남구대치동 452 번지의 351 필지
면 적	97,364.70 ㎡	193,083.20 ㎡
규 모	아파트 14 층 10 동 1,204 세대 상가 3 층 1 동 및 부대복리시설	아파트 14 층 21 동 2,436 세대 상가 3 층 1 동 및 부대복리시설
사업시행기간	82.5-83.5.31	82.5-84.10.31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01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
변경 시행 허가

1. 서울시고시제 355 호 (82.8.30) 및 서울시고시제 501 호 (82.12.3) 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허가되어 공사 진행중인 혜성여자고등학교에 대하여 사업 시행 허가 일부변경 (준공기한연기)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

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서류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가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3.6.10

서울특별시장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 음</p> <p>가. 위치 : 도봉구 하계동 산 16-38 일대</p> <p>나. 면적 : 9554 ㎡ (2,890 평)</p> <p>다. 명칭 : 혜성여자고등학교</p> <p>라. 변경내역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당초준공예정일</td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변경준공예정일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3.6.3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4.9.30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02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</p> <p>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</p>	당초준공예정일	변경준공예정일	83.6.30	84.9.30	<p>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3.6.19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 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 2. 사업주체 : 중구인현동 1 가 115-1 (주)삼창주택 대표 공병태 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. 위치 : 도봉구월계동 산 189 번지 외 13 필지 나. 면적 : 10,065.75 ㎡ 다. 규모 : 아파트 12 층 2 동 216 세대 상가 3 층 1 동 및 부대복리시설 4. 사업시행기간 : 83.6-84.6.30 5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신설 결정조서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류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폭원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연장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기 점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종 점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신설</td> <td>도로</td> <td>2</td> <td>6 m</td> <td>60 m</td> <td>도봉구월계동 447-39</td> <td>도봉구월계동 447-13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고	신설	도로	2	6 m	60 m	도봉구월계동 447-39	도봉구월계동 447-13	
당초준공예정일	변경준공예정일																				
83.6.30	84.9.30												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고														
신설	도로	2	6 m	60 m	도봉구월계동 447-39	도봉구월계동 447-13															
<p style="margin-top: 10px;"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03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영구역제 12 지구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고시 제 314 호 (81.8.28) 및 동고시제 409 호 (81.11.10) 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된 도영구역제 12 지구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 41 조 및 동법시행령제 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 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3.6.11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 <p>가. 사업의명칭 : 도영구역제 12 지구 재개발사업</p> <p>나. 시행구역 : 종로구당주동 95-1 외 72 필지</p> <p>다. 시행면적 : 4,979.8 ㎡</p> <p>라. 시현자주소 및 설명 서울특별시 마포구동교동 183-1 도영구역제 12 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고 정 수</p>																				

마. 시행기간 : 1981.8.28-1983.7.31

바.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
 _대지 및 건축시설

- 대 지 : 1 필지 3,685.2㎡
- 건축시설 : 1 등 24,586,769㎡

층 수 : 지상 10 층, 지하 3 층
 주 용 도 : 업무시설, 공동주택, 관
 매 시설, 근린생활시설

사. 분양설계 : 별첨 (생략)

아. 분양대상자주소, 성명 : 별첨 (생략)

자.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
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증전토
 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:
 별첨 (생략)

차. 분양대상자의 증전의 토지 또는
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
 명세 : 별첨 (생략)

카.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증
 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
 이에 대한 청산방법 : 별첨
 (생략)

타.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
 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
 의 명세 : 별첨 (생략)

파. 보류지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
 처분방법 : 별첨 (생략)

하. 참여조합원이 취득하게 될 대지
 및 건축시설의 명세 및 참여 조
 합원의 주소, 성명 : 해당없음.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00 호

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지정공고

1. 서울특별시 공고제 270 호 ('83.5.21) 로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한 장안평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동법 제 56 조의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한다.
2. 환지에정지 변경 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동대문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별도 통보한다.

1983. 6. 8.

서울특별시장

- 환지에정지 변경내역 -

- 가. 사업명 : 장안평토지구획정리사업
- 나. 변경면적 : 별첨조서 참조
- 다. 변경위치 : 동대문구장안동 245-15
 외 20 필지 (변경도서생략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01 호

서울특별시올림픽사업비특별회계분임
징수관공인등록공고

서울특별시 분임징수관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세공무원 직인규칙 제 7 조에 의거 등록하고 관인규칙 제 9 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
1983. 6. 8.


서울특별시장

1. 공인명

- 가. 서울특별시올림픽사업비특별회계 분임징수관인
- 나. 서울특별시올림픽사업비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인

2. 사용개시일 : 1983. 6. 8

인 영	
공인명	서울특별시올림픽사업비 특별회계분임징수관인

인 영	
공인명	서울특별시올림픽사업비 특별회계수입금 출납원인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02 호

“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
공람공고”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23 호 (78.7.4) 와 동고시 제 278 호 (82.7.21) 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되고 동고시 제 279 호 (83.5.27) 로 일부 변경지적 고시된본동 1구역에 대하여
2.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와 제 42 조 규정과 동법 제 8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며 상기 구역내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(이해관계인) 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동 공람공고로 갈음 할것이며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(주택과)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3. 동 구역은 추후 동계획인가시 까지 동계획에 의한 토지사용수익 (건축, 매매등) 은 제한한다.

1983. 6. 9.

서울특별시장

<p>가. 공고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명칭 :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공람공고 ○ 시행자 : 서울특별시 ○ 위치 : 본동 1구역 (동작구본 동 9번지 - 126번지일부) ○ 면적 : 41,295 ○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○ 관리처분계획내역 : 별도개별통보문참조 ○ 건축계획 및 관리처분계획도면 : 관할구청 (주택과) 에 비치공람. 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304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 계획공람공고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제 75 호 (75.5.23) 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로 결정 및 다. 사업의 규모</p>	<p>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 59 호 (83.2.2) 로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초동 1170-3 번지의 7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 허가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같이 공람공고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3. 6. 9 서울특별시</p> <p>가. 사업시행지 : 강남구 서초동 1170-3 번지 외 7 필지</p> <p>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 시설 (학교) 시행</p>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기존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금회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총세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지면적</td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43,603.86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건축면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,918.17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907.33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,825.50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건축연면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7,356.58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,944.08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1,300.66㎡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기존	금회	총세	비고	대지면적			43,603.86㎡		건축면적	1,918.17㎡	907.33㎡	2,825.50㎡		건축연면적	7,356.58㎡	3,944.08㎡	11,300.66㎡		
구분	기존	금회	총세	비고																	
대지면적			43,603.86㎡																		
건축면적	1,918.17㎡	907.33㎡	2,825.50㎡																		
건축연면적	7,356.58㎡	3,944.08㎡	11,300.66㎡																		
<p>라. 사업시행지 : 강남구서초동 1170-3 학교법인 상문학원 대표 이우자</p> <p>마. 사업예정기간 : 착수년월일- 83.6. . 준공예정일- 83.12.31</p> <p>바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</p> <p>사.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</p>	<p>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별첨 (생략)</p> <p>아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 (생략)</p> <p>자.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로문의바람 (설계도서생략)</p>																			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05 호

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시행허가완료공고

- 1. 서울시고시제 88 호(82.2.26)로 도시계획 사업(가스공급설비)시행 허가된 성동구 군자동 205 일대에 대하여 공사완료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아래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3. 6. 9

서울특별시장

- 1) 사업의 시행지 : 성동구군자동 205 일대
- 2)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가스공급설비)
- 3) 사업의시행자주소성명 : 서대문구청 정로 3 가 368-2
극동도시가스㈜대표 배운수
- 4) 면적 또는 규모 : 33,058 ㎡
- 5) 사업의 착수 준공예정일 :
착수 - 82.3.15
준공 - 83.5.31

- 6)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: 별첨생략
- 7) 준공도면 : 별첨생략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07 호

도영구역 제 11 지구 재개발사업
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- 1. 건설부고시 제 367 호(73.9.6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 제 76 호(77.4.30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6 호(82.8.16)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영구역 제 11 지구 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하여 도시적개발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1983. 6. 10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의명칭 : 도영구역제 11 지구 재개발사업
- 나. 시행위치 : 종로구당주동 45-2의 29 필지
- 다. 시행면적 : 2,321.3 ㎡
- 라. 대지면적 : 1,625.2 ㎡
- 마. 공공시설 부담면적 : 696.1 ㎡
- 바. 건축계획(규모 및 용도는 건축허가도서 확정함)

- 건제율 : 45 % 이하
- 용적율 : 670% 이하
- 주용도 : 업무시설
- 층 수 : 15 층이하
- 배 열 : 전면 15 m 도로변 12 m 이상 후퇴

측면 15 m 도로에서 7 m 이상 후퇴

사. 시행자 : 서울시중구서소문동 37번지
서울지방번호사회 회장 이 병 호

아. 시행기간 : 1983. 7. 인가일 -
1985. 6.30

자. 공람기간 : 1983.6.10-1983.
7.10

차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
재개발과 (720-2704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08 호

투 기 과 열 지 구 지 정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3 조의
2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
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동 제 2 항에
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83.6.10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1. 지정구역 : 영등포구신길동4759번지
2. 면 적 : 15,890 m²
3. 아파트명 : 신길동삼성아파트
4. 규 모 : 아파트 12층2동 384 세대
5. 사업주체 : 삼성종합건설(주)

대표 안 병 휘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09 호

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
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회계관계
공무원직인신조등록공고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
개정령 (대통령령 제 11107 호, 83.4.
22) 에 의한 공무원교육원 지하철운
영사업소 분원신설에 따른 회계관계
공무원의 직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
하여,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 직인
규칙 제 7 조에 의거 등록하고, 관인
규정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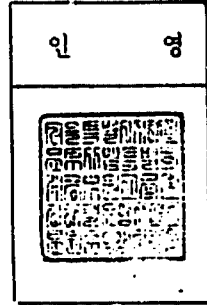
1983. 6. 9

서울특별시장

1. 직 인 명 : 별첨
2. 사용개시일 : 83. 6. 9
3. 직인의 인영 : 별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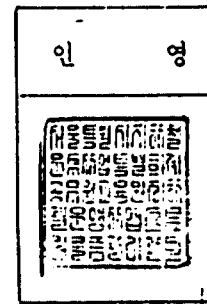
직 인 등 록 조 서

회 계 명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
 관서명(청소)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
 직 명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공무원교육원
 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분임경리관
 사용개시일 83년 6월 9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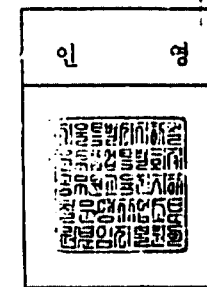
직 인 등 록 조 서

회 계 명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
 관서명(청소)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
 직 명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공무원교육원
 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물품관리관
 사용개시일 83년 6월 9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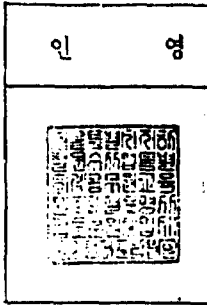
직 인 등 록 조 서

회 계 명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
 관서명(청소)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
 직 명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공무원교육원
 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분임지출원
 사용개시일 83년 6월 9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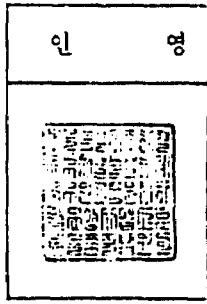
직 인 등 록 조 서

회 제 명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
 관서명(청소)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
 직 명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공무원교육원
 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
 사용개시일 83년 6월 9일



직 인 등 록 조 서

회 제 명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
 관서명(청소)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지하철운영사업소분원
 직 명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공무원교육원
 지하철운수사업소분원물품출납원
 사용개시일 83년 6월 9일



◎강서구공고제 24 호

공인추가신조 및 개각공고







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2 조 2 항
 및 동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다
 음과 같이 신월 2 동장의 직인 (민원
 사무전용) 및 제인의 추가신조 및
 신월 2 , 신정 4 동장의 직인 (민원사무

전용) 및 제인을 개각 사용 승인
 하였기 동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
 거 공고한다.

- 1. 사용개시일 : 1983. 6. 15
09:00
- 2. 공인의 인영 : 다음.

1983. 6. 7

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

인 영	(민원사무전용)	
		
공인명	신월제 2 동 장 의 인	신월제 2 동 제 인
인 영		
		
공인명	신정제 4 동 장 의 인	신정제 2 동 제 인
인 영		
		
공인명	신월제 2 동 장 의 인	신월제 2 동 제 인

사 령

© 1983 년 6 월 8 일 자

령제 200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	
정 경 용	구로구	3 호봉	지방토목기사보시보
황 창 혜	관악구	11 호봉	"
황 영 진	새종문화회관	3 호봉	"
임 대 성	강남구	4 호봉	"

성 명	발 령 사 함
신 회 범	서대문구 3 호 봉 지방토목기사보시보
이 현 제	관악구 " "
김 영 건	종합건설본부 " "
우 학 균	강서구 " "
김 영 철	은평구 " "
석 재 덕	공무원교육원 " "
문 영 출	지하철운영 사업소 " "

© 1983 년 6 월 3 일 자

령 제 203 호

성 명	발 령 사 함	현 부 서	직 급
전 호 선	건설관리국	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	지방행정주사보
손 승 광	상하수국	서대문구새 마을과	"
최 익 봉	교 통 국	동작구혹석 3 동	"
이 동 재	자동차관리사업소	내무국총무과	지방행정주사
채 병 석	동 작 구	상하수국업무과	"
홍 병 식	서대문병원	동봉구상 3 동	"
김 찬 호	관 악 구	지하철건설본부	지방행정서기
이 남 식	강 서 구	구로구사회복지과	"
남 점 현	"	성북구새 마을과	"
신 인 승	"	" 수도관리과	지방행정서기보
김 기 태	내 무 국	성동구기획감사과	지방행정주사
전 상 수	새마을운동중앙본부파견 군무물 해제합 강서구군무물 명합	내 무 국	지방행정주사보
박 철 수	동대문구	성동구주택과	지방행정주사

경계 215 호			
성 명	발령사항	현 부 서	직 급
이진민	행정주사보에 임함	용산구민방위과	지방행정주사보
정옥용	행정서기에 임함	" 산업과	지방행정서기
정경화	지적기원에 임함	" 도시정비과	지방지적기원
전봉주	행정주사보에 임함	성동구시민봉사실	지방행정주사보
임병두	"	" 청소과	"
이동조	지방행정서기에 임함	" 수도관리과	행정서기
박상정	지방지적기원에 임함	" 도시정비과	지적기원
반영철	기제기원보에 임함	" 청소과	지방기제기원보
이병진	행정주사에 임함	성북구산업과	지방행정주사
김재성	행정주사보에 임함	" 시민봉사실	지방행정주사보
김근영	"	" 총무과	"
최병웅	"	" 민방위과	"
김남식	농림기원보에 임함	" 공원녹지과	지방농림기원보
김용근	행정주사에 임함	도봉구사회복지과	지방행정주사
송근	행정주사보에 임함	" 세무2과	지방행정주사보
이혁재	"	" 민방위과	"
지만수	"	영등포구산업과	"
이회웅	"	" 청소과	"
조인상	행정서기에 임함	" 민방위과	지방행정서기

서울특별시